

교외 학생단체활동 안전관리 규정

제정 2020. 4. 29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외 학생단체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규정은 대학이 주최하는 교외 학생단체활동 및 대학 승인 총학생회 산하단체의 교외 학생단체활동에 적용한다.

② 본 규정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생단체활동에 적용하지 않는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대학 승인 총학생회 산하단체”란 대학이 승인하고 총학생회칙에 수록된 학생단체와 대학이 승인하여 등록된 동아리를 의미한다.
2. “교외 학생단체활동”이란 학생단체가 계획하고 대학이 승인하여 대학 부지 밖에서 실시하는 학생활동을 의미한다.

제4조(안전관리 담당부서)

- ① 학생지원팀은 다음의 학생단체가 수행하는 교외 학생단체활동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학생단체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.
 - 중앙집행위원회,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, 동아리연합회, 총여학생회, 방송국(PBS)
 - 교지편집위원회, 생각나눔위원회, 학생교육위원회, 학생소수인권위원회(모담)
 - 포카전준비위원회, 해맞이한마당준비위원회
- ② 각 학과는 소속 학생단체가 수행하는 교외 학생단체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.
- ③ 무은재학부행정팀은 무은재학생회 및 오리엔테이션준비위원회 관련 교외 학생단체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.
- ④ 생활관운영팀은 생활관자치회 관련 교외 학생단체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.
- ⑤ 학술정보팀은 도서관자치회 관련 교외 학생단체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.
- ⑥ 본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단체 교외활동 안전관리는 단체가 소속된 행정부서가 담당한다.

제5조(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)

- ① 제4조 각항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.
-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효과적인 교외 학생단체활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 또는 학생단체 소속 학생을 행사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
제6조(안전관리 담당자 동행) 안전관리 담당자는 제2조 1항의 교외 학생단체활동에 동행하고, 제2조 1항 이외의 교외 학생단체활동은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행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지원팀, 대외협력팀 및 안전팀에 보고한다.

제8조(안전관리 점검) 안전관리 담당자는 교외 단체학생활동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.

1. 숙박시설(장소)에 관한 사항
2.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
3. 기타 점검 세부 항목은 별도로 정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